

UNIST 산학협력관

일반오피스 및 실험실 신규입주기업 모집공고

[UNIST 산학기획팀 2026.6.10.]

UNIST에서는 산학협력관 일반오피스 및 실험실 입주를 희망하는 유망한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입주 희망 기업에서는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대상

- ① 입주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고,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, 누적 2,000만원 이상의 외부 투자금 혹은 정부 창업지원금 혹은 창업 관련 상금을 받은 UNIST 창업기업 (UNIST 교직원/학생 창업기업)
- ② 산학협력 목적의 UNIST 기술이전 창업기업
- ③ 창업지원기업, 자회사 등 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신청 가능
- ④ 본원에 현금 또는 주식 기부 등 기여도가 높고,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 성과를 입증한 기업
- ⑤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‘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’의 입주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자

* 강소특구 입주 대상 세부 내용 [참고 1] 참조

※ ①~④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, ⑤(강소특구 입주요건) 충족 필요

※ 입주 평가를 통해 입주 신청기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

2. 입주 기간

○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간 입주

* 입주 기간 만료 후 내부 심사에 따라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최대 5년의 입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

* 단, 장기입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심사를 거쳐 추가 3년(최대 8년) 범위에서 입주 연장 가능

3. 입주기업 모집 공간

공간 유형	배정 기준	기준인원
일반 오피스 (21~29㎡)	상주 인원 3인 이상일 시 배정 가능 (상주 인원은 4대 보험 가입 등으로 판단)	21~22㎡ : 기준인원 3~5명 27~29㎡ : 기준인원 5~7명
실험실 (49㎡, 90㎡)	외부 투자금 유치 실적 5억 원 이상 또는 외부 과제 수주 실적 10억 원 이상	49㎡ : 기준인원 5명 내외 90㎡ : 기준인원 9명 내외

* 신청기업 상황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입주기업 모집 공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신청한 공간과 다른 곳에 배정될 수 있음

4. 임대료

- 관리비 포함 월 12,300원(/㎡)
- 실험실 공간의 유틸리티비(전기, 수도) 사용량만큼 별도 청구
- * 임대료 부과기준 [참조 3] 참조
- * 산학협력관 내 공용회의실 및 공용공간 이용 가능

5. 입주신청 및 접수

- 1) 모집기간: 상시모집
- 2) 접수방법: 담당자 이메일 (industry@unist.ac.kr)
- 3) 평가일정(서면/발표평가): 개별통보
 - ※ 서면평가 통과자에 한해 발표평가 진행
 - ※ 평가항목: 창업자 핵심역량, 창업기업의 성장가능성, 창업기업의 본원 기여도, 창업보육실의 필요성
- 4) 입주 신청 구비서류

번호	제출서류	형식	부수	비고
1	(필수) 입주신청서	PDF	1부	
2	(필수) 사업계획서, 사업개략도		1부	
3	(필수) 법인등기부등본		1부	*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
4	(필수) 사업자등록증		1부	*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
5	(필수) 인감증명서		1부	
6	(필수) 전년도 재무제표		1부	
7	(필수)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 동의서		1부	입주신청서 [별지2]
8	(필수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	1부	*서류제출일 당일 발급분
9	(필수) 공간활용, 배치 계획		1부	
10	(해당시) 투자실적 증빙		1부	
11	(해당시) 안전관리 계획		1부	실험실 입주신청 기업만 해당

- 5) 재단심사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 승인 신청
- UNIST 입주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 승인 신청절차 별도 안내(입주예정기업에서 심사 신청)
 - 강소특구 입주관리 대상 여부 등 검토
 - 심사 소요기간: 5일 내외
- 6) 계약체결 및 입주
- 매월 1일자 계약체결 및 입주(최초 2년 계약)
 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요건 미통과시 입주 불가
 - * 입주절차 [참고 2] 참조
 - * 입주절차는 내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7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입주계약체결 이후 입주확인 및 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퇴거될 수 있음
- UNIST 산학협력단은 임대료 미납 방지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선납을 요구할 수 있음
- UNIST 산학협력단에서는 기업에게 입주계약 체결시 필요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 요청을 할 수도 있음
- 실험실 입주기업은 실험실 안전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법령과 울산과기원의 제규정을 우선 준수하고, 안전과 관련하여 UNIST 산학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
※ 문의 : UNIST 산학기획팀 (industry@unist.ac.kr / Tel: 052-217-1583)

[참고 1]

강소특구 입주관리 대상

(관련: 특구법 제 37조, 시행령 제32조, 33조, 시행규칙 제9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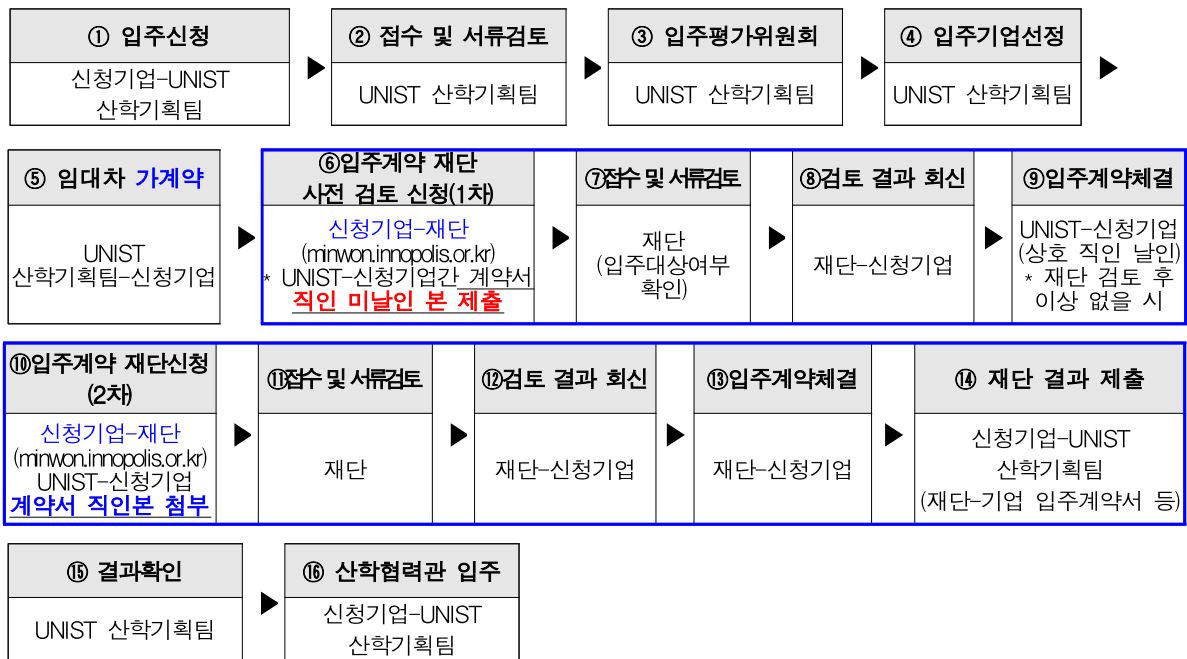
-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정부출연연구기관
 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」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
 - 대학, 국공립연구기관
 -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세라믹기술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
 -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
 -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
 - 위 사항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
 -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
 -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자 또는 그 창업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자
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 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-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-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
 -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·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※ 부대시설(편의점, 카페 등)의 경우,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증진 및 기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입주하는 자로 분류하지 않으며, 체육시설이나 기숙사의 경우,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·관리를 위해 입주하는 자로 분류됨

[참고 2]

UNIST 산학협력관 공간 입주절차

UNIST가 울산 울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내 입주를 위해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 심사 절차 추가(⑥~⑭) 진행

* 관련: 특구법 제 37조, 시행령 제32조, 33조, 시행규칙 제9조



*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승인 절차 미통과 시 UNIST 산학협력관 입주 불가

[참고 3]

UNIST 산학협력관 공간 임대료 부과기준

임대료		비고
일반오피스	월 10,000원/㎡	* 관리비 2,300원/㎡ 별도 * 유틸리티(광수도) 등 임대료 포함
실험실공간	월 10,000원/㎡	* 관리비 2,300원/㎡ 별도 * 실험실 공간은 전기, 가스 수도 별도

1. 원내 전화망/유선 인터넷망 사용 불가 (개별설치)
2. 면적 단위의 소수점은 반올림 계산
3. 전용면적 기준
4. **임대료 할인 (실험실 공간에 대해서는 아래 할인 적용하지 않음)**
 - 1) 본원 학생 및 교원 기업이 입주할 경우 *최초 2년 동안 일반오피스 임대료 50% 할인
* 최초 2년 : 실험실이든 일반오피스든 최초 입주한 이후 2년 기간 한정하여 임대료 할인
 - 2) 졸업 5년 이내 동문 기업 및 5천만원 이상 기부기업의 경우 동일 할인 적용
5. **임대료 할증** : 입주기업이 5년을 경과하여 계속 입주할 경우 입주 연장 계약 시 임대료 30% 할증 (임대료 할인 기준 미적용)

임대료 할증			
입주기간	~5년 이하	(1차)5년 초과~6년 이하	(2차)6년초과~8년 이하
할증률	-	30%	30%
할증금액	(예) 10,000원	(예) 10,000원 x 130% =13,000원	(예) 10,000원 x 130% x 130% = 16,900원

6. 입주 후 5년 경과한 기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재연장 승인할 수 있음. (최대 8년)
7. 임대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
8. **임대료 미납 방지를 위하여 보증금(임대료 및 관리비의 6개월 분) 요구할 수 있음**

보증금 예시		
구분	기준	할인 적용시
사용료 기준 (/㎡)	임대료: 10,000원 / 관리비: 2,300원 보증금: 6개월 분	임대료: 5,000원 / 관리비: 2,300원 보증금: 6개월 분
소형 사무실 (22㎡)	22㎡ x (10,000+2,300)원 x 6개월 = 1,623,600원	22㎡ x (5,000 +2,300)원 x 6개월 = 963,600원
실험실 (49㎡) *할인미적용	49㎡ x (10,000+2,300)원 x 6개월 = 3,616,200원	49㎡ x (10,000+2,300)원 x 6개월 = 3,616,200원

※임대료 할인기간 종료시, 임대료 증가분에 대한 보증금 추가 납부해야함